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

의안 번호	18540
----------	-------

제안연월일 : 2026. 4.

제안자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가. 심사경과

의안번호	대표발의자	발의일	심사 경과
2206654	박홍배의원	2024.12.18	· 제427회 국회(임시회) 제3차 전체회의(2025.7.18.)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 회부 ·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 원회(2026.4.2.) 상정 후 축조심사
2215047	박해철의원	2025.12.9.	·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2026.3.25.)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 회부 ·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 원회(2026.4.2.) 상정 후 축조심사
2215200	박해철의원	2025.12.12.	·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2026.3.25.)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 회부 ·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 원회(2026.4.2.) 상정 후 축조심사

나.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
법안심사소위원회(2026.4.2.)에서 이상 3건의 법률안을 병합하여 심
사한 결과, 이를 통합·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함.

다. 제434회 국회(임시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4.7.)
는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고용노동법안
심사소위원회에서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2.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고, 해당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동절기 건설근로자 고용안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8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중 ‘동절기 건설근로자 고용안정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최근 건설경기 불황 및 침체가 계절과 관계없이 지속되고 있는 사항을 고려할 때, 특정 계절에 한정된 고용안정 대책 수립은 문제가 있고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특정 절기에 한정하지 않고 종합적인 고용안정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자 함.

또한, 현행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는 매월 건설근로자공제회에 피공제자의 출퇴근 기록 및 근로일수를 전자카드 기록을 활용해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출퇴근 기록 등을 위한 전자카드 인식 단말기 설치 및 운영에 관해서는 대통령령으로만 규정, 불이행의 경우 제재처분이 불가능

하여 제도 운영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전자카드 발급 의무 대상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단말기 설치에 경제적 부담이 있는 소규모 건설공사 등 실질적으로 단말기 설치가 곤란한 현장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용 애플리케이션 활용이 가능토록 하며, 전자카드 단말기 미설치 또는 예외적인 이동통신단말장치용 애플리케이션 미활용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특정 절기에 한정하지 않고 종합적인 고용안정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동절기’ 요건을 삭제함(안 제3조제2항제7호).

나. 전자카드 발급 의무 대상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단말기 설치에 경제적 부담이 있는 소규모 건설공사 등 실질적으로 단말기 설치가 곤란한 현장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용 애플리케이션 활용이 가능토록 함(안 제13조제5항·6항).

다. 전자카드 단말기 미설치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용 애플리케이션 미활용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26조제2항제8호의2 신설)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7호 중 “동절기 건설근로자”를 “건설근로자”로 한다.

제13조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중전의 제5항) 중 “사용 등에”를 “사용, 제5항에 따른 전자카드 단말기 설치·운영 및 이동통신단말장치용 애플리케이션 활용 등에”로 한다.

- ⑤ 제4항에 따른 사업주(사업이 여러 차례 도급으로 수행되는 경우에는 원수급인을 말한다)는 피공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소규모 건설공사 등 전자카드 단말기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동통신단말장치용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하여 피공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6조제2항에 제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8의2. 제13조제5항을 위반하여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하지 아니하거나 이동통신단말장치용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하지 아니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 계획의 수립·시행) ① (생략)</p> <p>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p>1. ~ 6. (생략)</p> <p>7. <u>동절기 건설근로자 고용안정</u>에 관한 사항</p> <p>8. (생략)</p> <p>③ ~ ⑤ (생략)</p> <p>제13조(피공제자의 근로일수 신고 및 공제부금의 납부) ① ~ ④ (생략)</p> <p><u><신 설></u></p>	<p>제3조(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 계획의 수립·시행) ① (현행과 같음)</p> <p>② ----- -----.</p> <p>1. ~ 6. (현행과 같음)</p> <p>7. <u>건설근로자</u>----- -----</p> <p>8. (현행과 같음)</p> <p>③ ~ ⑤ (현행과 같음)</p> <p>제13조(피공제자의 근로일수 신고 및 공제부금의 납부) ① ~ ④ (현행과 같음)</p> <p>⑤ <u>제4항에 따른 사업주(사업이 여러 차례 도급으로 수행되는 경우에는 원수급인을 말한다)는 피공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소규모 건설공사 등 전자카드 단말기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동통신단말장치용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하여 피공제</u></p>

⑤ 제1항에 따른 공제부금의 금액과 납부, 제4항에 따른 전자카드 발급 및 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과태료) ①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8. (생략)

<신설>

9. (생략)

③ · ④ (생략)

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⑥ -----

-----사용, 제5항에 따른 전자카드 단말기 설치·운영 및 이동통신단말장치용 애플리케이션 활용 등에-----
-----.

제26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 8. (현행과 같음)

8의2. 제13조제5항을 위반하여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하지 아니하거나 이동통신 단말장치용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하지 아니한 자

9. (현행과 같음)

③ · ④ (현행과 같음)